

인권지킴이단 회의록

일 시	2020년 10월 27일(화) 오전09시30분~10시30분	장 소	면회실
참 여 자	인권전문가 : 이미현 꿈틀원장 직원대표 : 정향아, 박은영, 김광재		
안 건	<정기회의> 1. 1차 회의 주요내용 결과 보고 2. 11월 주요사업 안내 및 추후계획 보고 <사례회의> 1. 사례보고 <기타의견>		
회 의 내 용	1. 1차 회의 이후 생활인들에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. 인권지킴이단 회의가 단순 회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함. 2. 코로나19로 이전에는 '별 거 아닌 것'들이 지금은 작지만 별거가 되어버린 시대임을 강조. 원내로 나갈 수 없는 생활인들이 소소한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. 3. 사례에 대한 코멘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t가 가족과 동거 중에 있는 것이 아니며, 부양의무자인 직계를 벗어난 상황이므로 ct가 자발적 의지(의사소통 가능)가 있다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권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. - ct의 입장을 원치 않았던 외숙모와 그 가족들이 ct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족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음. 현 cases는 서로의 인권을 위해서도 ct가 수급권자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임. - 기관에서 가족에게 ct가 수급권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고 관련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다면 기관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종사자가 윤리적 딜레마에게 몰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격려함. - ct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더 높고,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바. 수급권자 신청을 해서 가족들의 심리,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ct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설명함. - 가족력을 봤을 때 ct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리적 데미지가 있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도 월 30만원 		

이라는 입소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족이 한 편으로는 대단한 것임. 그런 가족으로부터 ct가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져볼 것을 제안함.

사 진



그리스도요양원